

보도 일시	2022. 9. 30.(금) 조간 2022. 9. 29.(목) 11:00	배포 일시	2022. 9. 29.(목) 06:00
담당 부서	수산정책실 원양산업과	책임자	과 장 이규선 (044-200-5360)
		담당자	사무관 이성재 (044-200-5361)

투발루 어촌뉴딜 성공을 위해 뜻을 모은다

- 해양수산부,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 체결(9.30.(금))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30일(금) 한국원양산업협회,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투발루 어촌뉴딜 공적원조(ODA)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우리 원양어업의 주요 어장인, 투발루, 키리바시 등 남태평양 도서국에 제빙기나 발전기 등 물자를 공여하는 공적원조(ODA)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물자 공여만으로는 해당 국가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나라 외의 조업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대규모 공적원조(ODA)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투발루와 어촌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촌뉴딜 공적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고, 이번에 국내 지원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에 대해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본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수행기관으로서 본 사업의 착수를 위한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고,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소속 선사들의 어획물 운반선을 활용해 건설 공사 관련 물품의 이동에 대해 협조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관은 “우리 원양어업의 조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투발루 어촌뉴딜 공적원조(ODA) 사업은 투발루에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우리 원양업계는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한국원양산업협회-한국농어촌공사 간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해양수산부,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농어촌공사는(이하 “해수부”, “원협”, “농어촌공사”라 하며, 총칭하여 “당사자”라 한다)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양 핵심어장의 어촌뉴딜 ODA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첫 번째 사업인 투발루 어촌뉴딜을 통한 어촌 주민 친환경 역량 강화 ODA 사업(이하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 추진 관련 정부, 원양업계, 농어촌공사 간의 지속적이고 밀접한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당사자 간 협력을 통해,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약기관 간 역할 분담 명확화를 통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수반한 정보, 전문가 자문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사항) ① 당사자는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역할분담하여 협력한다.

가. 해수부는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에 대해 총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담당한다.

나. 원협은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의 이행을 위한 양자협의 준비와 소속 선사들의 어획물 운반선을 활용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사 관련 물품 등의 이동 협조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다. 농어촌공사는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수행 기관으로서 본 사업의 착수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라. 당사자는 제 2조의 협력사항의 세부적인 내용과 본 조항의 이행 관련 추가적 활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자문) ① 당사자는 본 업무협약서에 의한 협력활동의 이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건설공사, 국제협력, 역량강화 등)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이행) ① 당사자는 본 업무협약서에 의한 협력활동의 이행을 위해 연락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당사자는 본 업무협약서의 제 2조를 포함한 협력활동의 이행방안을 상세히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지적 재산권 및 기밀유지) ① 당사자는 공동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소유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호 공동 사업 추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의성실의무) ①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 및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②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으며, 이를 협약의 폐기 최소 1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7조(유효기간) ① 이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날인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은 만료일 1개월 전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협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협약서의 날인 및 보관) 이 협약서가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3부를 작성·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9조(시행) 이 협약서는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9월 30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최 용 석

한국원양산업협회
협회장

윤 명 길

한국농어촌공사
이사

송 성 일
